전주중앙중학교 학교규칙

제정 1999. 03. 19. 관리과 제165호 개정 2021.5.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41조에 의거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전주중앙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공북2길에 둔다.

제2장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 ①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 즉, 조 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 여할 수 있다.

제5조(학년·학기) 학년 및 학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다.

- ① 학년은 3월 1일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1학기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국경일,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4월 24일
 - 3. 하계 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 4. 동계 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 5. 학교장이 정한 재량휴업일
- ② 제1항의 3,4호 휴가 기간은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 각호 외에 비상 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학급편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매 학년 초 관할교육 청에서 편성·배정한 학급수에 의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배정된 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①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자
- ②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을 장기결석한 자
- ③ 기타 전라북도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교외체험학습·고사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용한다.(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0조(수업일수)

- ①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②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되 본교의 체험학습규정에 의한다.
- ④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서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 ⑤ 재입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법 정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

제11조(체험학습)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② 개인교환학습의 인정기간은 4주 이내, 단체교환학습 인정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

- ③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횟수와 관계 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④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학기 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확인 기간은 피해서 실시한다.
- 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⑥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한다.
- ⑦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⑧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제12조(고사) 고사는 별도로 정한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제5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수료 및 졸업

제13조(입학자격)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 ② 초·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하여 초등학교를 조기 졸업한 자
-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 정된 자
 -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 2. 시행령 제98조의2 제1항 각 호(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다문화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④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적령아동과 학령아동을 본교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⑤ 학교장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초·중 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조기입학 승인을 받아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 할 수 있다.

제14조(입학시기)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따라 전·편입학의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전라북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업무 시행 계획)

제15조(입학허가)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2항 및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와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특수학급의 학생은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호에 의거한 특수학급 취학대상자로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로 한다.

제16조(전·편입학) ①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라북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업무 시행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전학 등), 제74조(편입학) 및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의거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단, 특수학급은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 한한다.

제17조(재취학) 본교에서 의무취학을 면제 받거나 유예한 자로서 다시 취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재취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재취학의 절차와 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따른다.

제18조(재외국인 자녀의 입학 절차 등)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이 발행 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제19조(전학)

- ①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전입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및 전산자료를 송부 요청하고, 전출의 경우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소지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규정에 의한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 ①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 처리한다.
- ② 면제 또는 유예는 불구나 폐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가능)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유예를 결정할 때, 아동의 질병이나 성장부진 등의 사유는 의사의 진단서를, 행방불명 등의 사유는 읍·면·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유예자등의 학적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평가와 학교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제22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④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3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전라북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단, 자유학기 운영으로 학업성취도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어, 사회 (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가 모두 우수한 자]
-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③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4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야 하다.
- ③ 제2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한다.
- ④ 각급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조기진급을 인정할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 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1. 제24조 제3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2. 제24조 제5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대체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 징수

제27조(수업료·입학금)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8조(교육활동비 및 기타비용 징수)

-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현장학습, 방과후학교 활동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이 희망하는 청소년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거나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각종 성금, 위문금을 모금할 수 있다.
- ④ 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의 징수 시기는 학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학교 회계업무 처리 기준에 따른다.

제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9조(포상)

- ① 학교장은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각 교과별로 선행·효행·봉사활동 등으로 타의 귀 감이 된 자,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실적이 두드러진 자 등 다양한 분야 에 걸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포상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 규정(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제30조(학생장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①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훈육·훈계의 방안으로는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활동, 학습활동, 봉사활동,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③ 지도교사(담임교사, 교감, 교장 등)의 수차례에 걸친 주의, 훈계, 상담과 지도에도 행동 교정과 발전이 없고 반성을 못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규정에 의거해 징계할 수 있다.
- ④ 징계 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학생의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장애학생대상 학생징계)

- ① 특수학급·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교(다른 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적용)에 적용 된다.
- ②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 ③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

제32조(장애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이유로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피해학생의 보호 기준) ① 심리상담 및 조언

- ② 일시보호
- ③ 치료를 위한 요양
- ④ 학급교체
- ⑤ 전학권고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4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 ①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민주적인 학생 자치회 활동(학급, 전교다모임)
 - 2. 학예, 체육, 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3.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4.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5. 각종 봉사활동
 - 6. 청소년단체 참여 활동
 - 7.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제35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 ①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표준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10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6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할 수 있다.

- ① 학교규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 4.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 5.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③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④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제37조(경조사 출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으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제38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②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미인정 어학연수 등
- ③ 기타 결석
 - 1. 전출로 인한 결석인 경우(전출입 날짜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됨)

- 2.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3.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의 경우

제39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 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40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 및 사건 처리 업무주관
 - 5.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전주 중앙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11장 장애인 차별 금지

제41조(차별금지)

- ①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

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제43조(개인정보보호)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제4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하다.

제4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①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6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장 학칙개정절차

제47조(학칙 개정절차) ① 학칙은 교무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시행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 제정 1999.03.19. 관리과 제165호
 (시행일) 본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 2002.12.23.관리과 제1937호(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개정 2004.08.09. 관리과 제5369호(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4. 개정 2006.05.11. 관리과 제5263호(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5. 개정 2011.04.04. 학교정책과 제6577호(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6. 개정 2013.02.14. 교육혁신과 1356호(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7. 개정 2021.05.20.
-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